

준비서면

사건 99 가합 48608호 해고무효확인

원 고 김 의1
피 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순환 휴직의 불리성의 정도

- 원고들은 “당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남편을 순환 휴직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에 겁이 나서 스스로 당예퇴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순환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등 기간 동안 기본급의 80%(월 평균 임금의 50%)에 달하는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며 기타 기 대출 주택자금의 혜택등 근로자로서의 혜택은 아무 이상없이 계속 부여됩니다. 피고 농협은 또한 남녀 임금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1년간 휴직하고 평균임금의 59%만을 수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내인 직원이 피고 농협에 계속 근무하면서 월 보수를 받는다면 종전의 부부 수입 전체에 비해 25%만이 감소될 뿐이어서 이는 겁낼 정도의 커다란 불이익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金·張 法律事務所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1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순환휴직의 불이익이라는 것이 이렇듯 비교적 가벼운 것임을 감안할 때, 만약 위 원고들이 “남편이 순환휴직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웠고 그 두려움의 정도는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남편을 순환휴직의 대상으로부터 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는 설득력이 매우 약하다고 할 것입니다.

2. 정리해고가 무서워 미리 사직을 할 필요가 없음.

원고들은 “자신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으면 추후 정리해고가 이루어 질 때 남편이 순환휴직 대상 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하여 이를 겁내 부득이 명예퇴직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듯도 합니다..

그러나 이도 그 전.후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고들의 핑계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말로 겁을 주거나 자유로운 의사 형성에 압박을 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피고는 순환휴직의 우선 순위만 설명했을 뿐이고 정리해고의 순위를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추후 정리해고라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 원고들의 남편이 부부직원이라는 지위로 인해 정리해고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원고들이 바로 사직을 함으로써 남편을 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리부터 겁에 질려 사직을 함으로써 일찌감치 남편을 구할 필요가 어디에 있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도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2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입니다.

3. 원고들의 진정한 사직 이유

위와 같이 원고들이 사후에 실제로 정리해고가 이루어 질 때 그때에 가서도 남편들을 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할 것이므로 남편들을 구하기 위해 지금 원고들이 사직을 할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들은 그야말로 피고의 강압에 의해 사직을 한 것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해득실을 따져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 경우가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가. 피고가 강압을 했다는 점은 원고들이 입증할 사항이며, 피고로서는 전혀 그러한 강압을 행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밝힙니다.

특히 원고 김 []의 경우는 한번 제출한 명예 퇴직원을 곧바로 철회했다가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다시 제출했는바, 만약 피고의 강압이 있었다면 어떻게 등 원고가 기제출한 명예 퇴직원을 철회하였겠습니까?

원고 김 []도 이해득실에 관하여 심사 숙고한 끝에 신청기한 마지막 날에 이르러 스스로 명예 퇴직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고들은 1999. 1. 25 각 사직서를 제출한 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각자의 퇴직금을 수령했고 (원고 김 []은 일반 퇴직금 금14,202,679원, 명예 퇴직금 금22,140,300원 합계 금36,542,979원을, 그리고 원고 김 []은 일반 퇴직금 금37,523,348원, 명예 퇴직금 금29,920,800원 합계 금67,444,148원을 수령했습니다), 송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3 -

TEL (교관)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별식에도 참석했으며 그로부터 4개월 후인 같은 해 5. 13 갑자기 피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하기까지 전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갑자기 태도를 변경한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상으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남편 등 가족 전체와 심도있게 숙고하여 스스로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이 틀림없다고 추정할 것입니다.

그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동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 (1) 정리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 및 피고 기준의 공정 타당성

(가) 원고들이 스스로 생각한 정리해고의 가능성

금융기관의 정리해고는 피고가 금융기관 중에서 유달리 그리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소위 IMF 사태 이후 정리해고는 금융기관에서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피고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 자신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장차 농협, 축협, 통폐합 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리해고 시 원고들 부부 중 일방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을 숙고하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원고들은 남편 등 가족들과 심사 숙고한 결과 부부직원

金·張 法律事務所

증 어느 일방이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했고, 그러한 가능성의 불가피성을 마음속에서 받아들인 것입니다. 나아가 그러한 원고들의 결정은 피고가 정한 순환 휴직자 선정의 기준 (이것이 추후 정리해고 시 정리해고 대상 선정 시 참조가 될 것으로 원고들은 생각했습니다)의 공정성,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 기인하며 또한 마음속에서 그 기준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 순환휴직 기준 등의 공정, 타당성

원고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부 직원이 후일 정리해고 시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리해고라는 심각한 단계에서 어느 가정의 가장이 실직을 하는 경우보다는 부부직원 중 어느 일방이 대신 정리해고됨으로써 2 가정을 구할 수 있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사업자 그 누구라도 차선택으로서 원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으로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이나 노동 조합 자신도 수용할 만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경제적으로 충격이 덜한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 부부직원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며 모든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피고의 기준은 유독 부부직원만을 문제로 삼았고 모든 맞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5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벌이 부부는 도의시켰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비난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선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피고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한 바가 없고 다만 순환 휴직 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 기준 중 피고가 언급한 부부직원은 “경제적으로 충격이 덜한 직원(상대적 생활 안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진정한 피고의 의도는 무조건 부부직원을 우선적인 순환 휴직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점은 갑제3호종의 기재 내용에 의해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직원이라고 할 지라도 추후 구체적인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 당시 그들이 상대적으로 생활 안정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경제적 생활 안정자”라는 범주에서 벗어나므로 그들은 순환휴직 대상으로 고려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피고의 의도였으며 다만 이번은 순환휴직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안점은 명예퇴직제의 시행에 있으므로 표현을 쉽게 하여 부부직원을 상대적 생활 안정자의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을 뿐입니다.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기준은 공정하고 타당한 것이기에 노조도 동의한 것이고 원고들로서도 역시 충분히 수긍하였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6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던 것입니다.

(다) 원고들은 스스로 명예퇴직을 함으로써 기준의 공정, 타당성을 수증했음.

만약 “상대적인 경제적 생활안정자라는 기준”이 부당하다거나 “맞벌이 부부가 경제적 생활 안정자이며 부부직원이 대표적인 맞벌이 부부로서 상대적 생활안정자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는 점이 부당한 것으로 원고들이 생각했다면, 원고들은 이번에 명예퇴직을 할 리가 없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고들로서는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면서 추후 만약 피고가 정말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부부직원 중 일방을 정리 해고하는 경우 원고들이 그 선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 부당성을 소송 등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번 명예퇴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 소 결 론

요컨대, 상대적인 경제적 생활 안정자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것은 일반론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기준이라고 할 것이고 부부직원이 일반적으로 그에 해당한다는 점도 역시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는 단지 순환휴직 대상자 선정 기준만을 정한 것인데,

— 金·張 法律事務所 —

원고들은 협동조합 통합 과정에서 인원 정리나 정리 해고가 있을 것으로 스스로 예측했고 그 경우 부부 직원이 소위 상대적 경제생활 안정자로서 우선적인 정리 대상자로 일응 고려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생각했으며 나아가 그 기준의 일반적인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방도가 없었기에 결국 원고들은 정리해고 당하는 경우와 명예 퇴직하는 경우의 이득실을 비교했음이 틀림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리해고 보다는 명예퇴직이 훨씬 유리하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평균 여직원의 근속기간 및 전통적인 여성관

(가) 평균 여직원의 근속기간

한편 원고 김 [] 는 근속연수가 13년 10개월에 이르며 2명의 어린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 농협의 여직원의 평균근속연수는 10년에서 14년 사이가 됩니다.

올제5호증 도표에 보면 1999. 8. 11 현재 여직원의 대다수는 3급 직원으로 3급 여직원의 수는 2895명이며 2급여직원의 수는 그 5% 미만인 134명에 불과합니다. (4급 여직원은 3급 직원의 5%에 불과한 수입입니다.) 위 2895명의 3급 여직원의 평균근속연수는 위 1999. 8. 11 현재 8.7년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여직원은 3급에서 퇴직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8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바 실제로 3급 여직원은 이견 명예퇴직이 시행된 1999이전
에는 매년 150명과 250명 사이에서 퇴직을 해 왔고 그 3
급 퇴직 여직원의 평균근속연수는 바로 10년에서 14년 사이
입니다.

위와 같은 여성의 평균적인 근무 기간은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은 우리나라 대다수 여성의 보수적인 인생관(자녀 양
육 및 가사 운영을 중대한 여성 본래의 과제로 생각함) 그
리고 적지 않은 명예 퇴직 금액과 함께 원고들이 이번에 명
예 퇴직을 선택한 동기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
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나) 전통적인 여성관

기실 우리 여성의 바람직한 위치에 대해 소위 일부 여성진
보론자들은 모든 면에서 남성과 등등하게 처우받을 것을 주
장하며 가정 내에서는 그들은 남성도 육아 및 취사, 세탁
등을 반반씩 나누어 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주로 대항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하
면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보다 대접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여성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데에 많은 중
점을 두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성이 가정에서 육아 및 취
사, 가정 경제를 담당, 운영하며 가정을 이끌어 가는 지위를
“가사 노예”라고 표현하는 이도 있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성 중에서도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 육아 및 취사 ,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중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9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가정 경제의 운영 등은 여성이 전담하고 남성은 직장에 전념하여 가정의 경제적 자원을 조달, 책임지는 입장을 선호하는 숫자도 상당히 많다고 할 것입니다.

기실 매스컴 등에서 소위 진보적인 여성 이론가라는 사람들이 주창하는 “이혼은 선택이다”라든가 “이혼을 당하느니 이혼하는 것이 낫다”라며 극도의 개인주의 및 여성우위를 주장하고 (사회 및 가정에서 올바른 여성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고) 오직 남성에 대항하여 우위를 차지할 것을 목표로 하여 이를 위해서는 이혼을 권장하는 것도 마지않는 경박한 풍토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정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하게 안정을 유지하며 나아가 (결혼 가정이 50%에 달한다는) 여느 외국과 달리 대다수 미성년자들이 건전성을 유지하며 비교적 마약 등 청소년 범죄가 적은 것은 대다수의 여성 자신은 우리의 전통있는 어머니 상, 안정된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이끄는 강한 여성 상 내지 어머니 상을 모범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기한 것입니다.

특히 영아 때부터 초등학교 입학 무렵까지의 어린 아이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단계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러한 중요한 교육을 여성이 전통적으로 담당해 왔고 현대에 있어서 가정 내에서의 그러한 여성의 긍정적 역할, 가정의 수호자로서의 여성상은 매우 중요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10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다) 원고 김[]도 위와 같은, 우리 전래의 가치를 보존하고자 하는 전통적(보수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는 여성으로 생각됩니다. 등 원고는 만 3살 6개월이 된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이며 남편하고 핵가족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바, 자녀 양육에 특히 시간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리라는 점은 능히 짐작이 갑니다. 위 원고로서는 이제 위 쌍둥이 남매와 같이 지내는 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늘리는 것이 그들의 교육적 측면이나 심리적 안정감의 형성 등 기타 여러 면에서 절대 필요한 시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 13년 8개월의 직장 생활을 한 원고는 어차피 조만간 퇴직을 할 의사가 있었던 차에, 이번에 '일반 퇴직금 금37,523,348원에 육박하는 금29,920,800원에 달하는, 13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의 기회 (퇴직금을 2배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처음으로 주어지자, 이를 일종의 기회로 여기고 남편, 시부모, 친정 등과 심도있게 상의하는 등 부부, 가족 공동의 심사 숙고 끝에 등 원고는 명예퇴직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 원고 김[]은 근속기간이 7년으로서 원고 김[] 보다 짧은 것은 사실이며 한편 만 1살의 영아 1인만을 둔 비교적 젊은 나이이므로 원고 김[]의 경우보다는 전통적인 여성관의 영향력이 적은 단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 원고도 남편과 핵가족을 구성해 살고 있으며 따라서 어린 영아의 양육에 고민을 했을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원고 김 []의 경우는 원고 김 [] 보다는 위 (1)항에 언급한, “부부직원이 정리해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아래 (3)항에 언급한, “정리해고로 퇴직하느니 이번 처음으로 주어진 명예퇴직을 선택하여, ‘일반 퇴직금 금 14,202,679원의 155.9%인 금22,140,300원에 이르는, 13개월분의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한 점이 다소 보다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3) 추후 퇴직하는 경우에 비해 원고들이 이번 명예퇴직함으로써 얻는 이득

(가) 원고 김 []로서는 추후 길어야 1 내지 2년 정도만 근무할 생각이었는데 그때 퇴직하는 경우에 비하여 이번에 명예퇴직을 하던 일반퇴직금 금37,523,348원에 거의 육박하는 규모인 금29,920,800원이라는, 13개월치의 평균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중전 1998년도의 명예퇴직등 소위 IMF 사태이후의 명예퇴직에 있어서는 대부분 7내지 8개월 정도의 명예퇴직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명예퇴직 후 1년간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상당한 보수(기타 금융기관의 사례에 비추어 월등히 높은 금액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 원고 김 []은 앞으로 3년 내지 7년 정도 더 근무하였을 것이라고 기대되기는 하지만, 13개월치의 보수 금22,140,300원을 명예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바 이는 일반퇴직금 금

— 金·張 法律事務所 —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12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14,202,679원의 155.9% 상당액이고 또 1년의 계약직 근무가 보장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대체로 최근 및 장래의 금융기관의 경향은 정규고용을 피하며 필요한 인력 부문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원고 들 같은 경력자는 추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 원고들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함.

만약 원고들이 명예퇴직원을 철회하고 피고 농협에서 근무를 하고자 한다면 원고들은 기 수령한 명예퇴직금을 반납해야 할 것임은 원고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고로서는 과연 원고들이 위 비교적 큰 금액인 금 22,140,300원(원고 김 []의 경우) 및 금 29,920,800원(원고 김 []의 경우)이라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는 원고들의 재력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원고들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으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말이며 이는 환언하면 원고들에게는 이견 명예퇴직금이 명예퇴직을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었음을 지적하고 강조하기 위한 가정적 표현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원고들의 본말 전도의 주장

金·張 法律事務所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13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

가. 원고들은 관련 형사 고소장에서 “부부직원 들 중 어느 한 사람이 나가야 한다면 우리 사회 관념상 여성(아내)가 그만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러한 현실적 상황 아래 피고가 ‘부부직원 들 중 어느 1인은 순환휴직 또는 정리해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결국은 ‘여성이 나가라’는 얘기이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가 금지한 것은 해고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는 행위이며, 이건의 경우와 같이 일용 부부직원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라는 이유로 우선적인 휴직 대상자로 고려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들은 스스로 사직서를 낸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이점만으로도 위 법 제8조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기타 남녀고용평등법상 위반이라고 볼 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 원고의 주장은 논리의 비약이 매우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건강부회이며 본말 전도에 불과합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여성을 옥아 담당자 및 가사 경제 운영자로 보는” 사회 통념을 부당하다고 비난하고 싶으면 자유로이 비난하여 여론을 형성하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스스로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회 통념에 스스로 극복한 자기 자신도 반성해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할 듯 합니다.

나. <순환 휴직 명령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 직원인 가정이 그 어느 일방이 휴직을 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충격이 다른 가정(부부직원이 아닌 직원이 휴직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으리라>는 점은 우리 일

— 金·張 法律事務所 —

반인의 통념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진정한 취지는 상대적 생활 안정자(경제적으로 충격이 덜한 직원)를 순환 휴직의 우선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위 부부직원은 일응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예시한 것입니다.

위 상대적 생활 안정자를 우선적인 순환 휴직 대상자로 고려하는 것의 공정성, 타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부부직원이 그 상대적 생활 안정자에 속한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히는 모든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 생활 안정자에 속한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나 피고가 그 표현을 부부직원이라고 했다 하여, “맞벌이 부부를 예시에서 빼놓았으므로 부부직원도 빼야 한다”거나 “부부직원은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아니다” 라거나 하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 요컨대, 이 “상대적 생활 안정자라는 기준”의 공정성, 타당성을 부인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위 부부직원을 일응 우선적인 순환 휴직의 대상직원으로 고려한다는 피고의 방침의 공정성, 타당성 역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준을 미리 정한 피고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물론 없다고 할 것이며, <부부직원 중 어느 사람이 휴직을 해야 한다면 이는 우리의 현 사회문화 현상 아래에서는 틀림없이 여성(아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할지라도 “부부직원 중 어느 일방이 우선적으로 순환 휴직의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기준의 공정성 및 타당성에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라.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우리 사회 문화의 현상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으려면, 순환휴직의 기준을 세움에 있어 “부부직원 등 상대적 생활안정자가 우선 고려 대상이며 단 여성(아내)은 절대 스스로 휴직할 수 없으며 반드시 남성(남편)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정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소위 ‘현재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는 성에 대해 잠정적, 인위적으로 보호를 가하여 불평등을 교정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인위적인 보호책은 오히려 역차별로서 남녀 평등을 규정한 헌법 위반의 소지가 많다 할 것이고 기타 여성에게 인위적인 보호를 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이 받을 피해에 대해 보완책도 있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보다 진지한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 입법 사항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으로서, 일개 기업인 피고에 대하여 ‘여성에게 그러한 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무조건 피고에게 “부부직원이 경제적 생활 안정자로 판명되는 경우 여성(아내)을 휴직이나 정리의 대상으로 하지 말고 강제적으로 남성(남성)을 우선 휴직이나 정리 대상으로 삼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현금의 우리 사회 문화의 현실이나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부직원이 스스로 이해득실을 살펴 그들의 가정에 가장 합당한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을 강제적으로 저지하는 결과 밖에 안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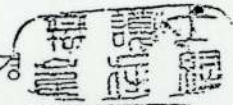
마. 이리하여 피고는 부부직원의 자유로운 논의, 식구들과의 진지한 토의는 권고했으며 이에 실제로 원고들은 심사숙고 끝에 나름대로 그들 가정에 가장 이로운 결론을 채택한 것입니다. 부부직원에 따라서는 남성(남편)이 명예퇴직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역시 그들 가정이 처한 상황에 따른, 가장 합당한 방법을 택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金·張 法律事務所 —

1999. 9. 22.

위 피고 소송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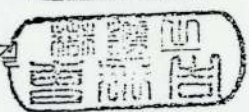
변호사 최 재 경



변호사 김 원 정



변호사 조 영 결



서울지방법원 제41민사부

귀중

金·張 法律事務所

서울 종로구 내자동 223 (세양빌딩)

- 17 -

TEL (교환) 3703-1114, FAX 732-7935
(사무국 직통) 3703-1650/1